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복지사’의 개입에 관한 대안적 연구*

An alternative study on Intervention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on the Domestic Violence Law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
교 수 박 옥 임
강 사 유 숙 영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

Prof. : Park, Ok-im

Lecturer : Yoo, Sook-young

〈 목 차 〉

- I. 서 론
- II.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자격제도
- III.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개입방안
- IV.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 개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role and license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and suggest in the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crime family welfare specialist compulsory intervention rules legislate in the Domestic Violence Law.

As for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by a plan of the role and intervention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on the Domestic Violence Law. First, role and its license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second,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defense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system, third, for support legislation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on the Domestic Violence Law. Namely,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role in a report obligation of domestic violence accident,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intervention in an emergency aid process of police,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6차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intervention in decision process of a court,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intervention in the nation obligation in regard to domestic violence accident,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center.

Finally, for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role and intervention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on the Domestic Violence Law, after all, not only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of the system described above but also changes in people's understanding are important.

◆ key word: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법, 가정복지사, 개입

I. 서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가부장적 가족관념, 폭력에 대한 사회적 불간섭의 풍토가 팽배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 근친상간, 아동학대, 노인학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홍옥화, 2001). 이러한 가정폭력은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일어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반사회적인 문제이며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범죄의 일종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¹⁾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내구타에 대한 일반 형법의 적용 외에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또한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 형법의 적용마저도 꺼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사적인 공간이라고 여겨진 가정 안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해 무방비 상태로 폭력을 당하던 사회적 약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한 50

여 개국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한인섭, 1999).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최근 점차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심화현상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최근의 현상으로 보아 가정폭력은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가정폭력은 법제도의 실현 이전에 가족간의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가족간의 일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관여하여 가족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즉,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개입하겠다는 법은 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족과 국가권력의 집행기관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보다는 '가정복지사'라는 가족문제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유지와 폭력재발이 방지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오히려 가정문제에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가족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거나 가족해체가 촉진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법의 집

1) 가정폭력 관련법은 ①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7호 이하 '보호법'이라한다)이고, ②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 12. 13. 법률 제5436호 이하 '처벌법'이라한다)이다. 여기서는 이 두 법을 총칭해서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행자인 국가기관과 가정폭력피해자 및 행위자 사이에 중재해 주는 조정자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정자로서 가정복지사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보호법 제4조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무로서 가정폭력예방교육과 제6조의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에 관한 규정에 가정복지사의 의무배치와 처벌법 제4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의무와 제5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응급조치과정에 가정복지사의 의무개입, 제19조의 조사·심리와 제20조의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으로 '가정복지사'의 활용과 제29조의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시 가정복지사의 상담의견서 참조 등의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복지사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여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시기에 맞추어 가정폭력방지법상의 '가정복지사'의 개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첫째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자격제도에 대한 것을 고찰하고 둘째,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개입방안과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 개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자격제도

1. 가정복지사의 역할

가정복지란 "가정생활 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가정 스스로 생활의 유지·인격의 형성 및 발달·공동문화의 창조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라 할 수 있다(이완정, 1999). 이러한 가정복지의 충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복지사의 개념은 "가정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전달하는 주체자이며 따라서 가정복지의 이념을 구현하는 구체적 실천가"라 할 수 있다.

가정복지서비스에서 가정복지사의 필요성으로는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역사회의 기초는 바로 가정이며, 둘째, 개인과 가정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 셋째, 지역주민 및 각 가정과 보다 가깝게 연계되는 가정 중심의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의 증가, 넷째, 우리 나라는 가족중심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보다는 가정단위의 복지서비스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다섯째,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보다는 가정을 단위로 한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등을 들 수 있다(김정옥, 2000).

이러한 가정복지사의 역할은 첫째, 가정복지사는 관리자이다. 즉 대상가정의 현상, 문제,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내용 등을 조사·분석·진단(인적·물적 자원의 탐색과 배치, 처치 등), 그리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방법을 모색하고, 대상가정에 개입할 적절한 시기의 선정, 제공될 혹은 제공된 서비스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가정복지사는 주치의이다. 즉 가정복지사는 주기적으로 관내 대상가정을 방문, 상담하는 과정을 통하여 요구에 가장 근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필요한 경우 보다 전문화된 기관으로 연계시켜줄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정과 가정 혹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사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해당기관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셋째, 가정복지사는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가정복지사는 문제를 경험하는 대상가정이나 개인에 대해 정보제공에서부터 상담에 이르는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박혜인외, 1999; 이승미, 1999).

2. 가정복지사 자격제도

가정복지사 자격증이 사회적 공신력과 효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관련분야 및 다양한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보다 실천적인 교과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상

호 피드백과정을 통한 보완, 수정과정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전달주체의 양성과 관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가정복지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의 자격증이 되기 위한 입법화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이승미, 2000).

현재 가정복지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 1998년 2월 1차로 1,126명에게 가정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한 이래 매년 가정관리학계열 학과의 졸업생 중 가정복지사 자격인정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가정복지사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가정복지사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2000년 2월부터 대한가정학회로 이전되었다). 대한가정학회가 인정하는 가정복지사는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3급의 경우 '평생교육원'이나 '학점등록제'에 의해 가정복지사 자격인정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급은 '2년제 전문대학'에서 가정복지사 2급 자격인정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혹은 3급 이수 후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를 쌓을 경우, 그리고 1급은 '4년제 대학'에서 가정복지사 1급 자격인정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혹은 2급 이수 후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를 쌓을 경우에 인정한다.

현행 가정복지사 자격제도는 그 역사가 일천하여 하나의 공인된 전문 자격제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가정복지사의 국가인정자격부여와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복지사의 의무개입을 규정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개입방안

1. 가정폭력사건 신고의무에서 가정복지사의 개입 방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2조 3호에서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존속상해, 중상해·존속중상해, 폭행·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죄와 상해죄의 상습범, 유기·존속유기, 영아유

기, 학대·존속학대, 아동학사,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특수체포·특수감금, 협박·존속협박, 특수협박, 협박죄의 미수범,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죄 등, 아동복지법 제18조 2호를 위반한 죄(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그 한 예로 아동을 앵벌이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라 함은 가정구성원('가정구성원'이라 함은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처벌법 제2조 2호))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한다. 이렇듯 처벌법 제2조 3호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범죄학에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유기로 정의된다.

처벌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의 장,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한 각 복지시설 종사자와 그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 제4조 3항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김병주(1998))).

이에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의무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처벌법상의 신고의무자 외에 신고의무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의무자로 가

정복지사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는 이유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가족 고유의 역동성을 대학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동·장애인·노인에 관한 통합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한 가정복지사가 가장 효율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복지사를 배치할 전제로 한다면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2. 경찰의 응급조치과정에서의 가정복지사의 개입 방안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최일선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국가 기관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기대와 지탄을 동시에 받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정춘숙, 1999). 처벌법 제5조는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첫째,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둘째, 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셋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넷째,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을 접하였을 때 취하는 응급조치규정에 가정복지사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실제 가정폭력사건을 접한 경찰관의 응급조치에 대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내용 중 상당부분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가정폭력사건을 대하는 경찰관의 태도에 대한 내담자들의 불만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행위자가 만취상태이니 술이 깨면 집으로 데려가라는 등, 오히려 가정폭력행위자를 두둔하는 언동을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목살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게만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응급조치를 맡겨 줄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사의 개입 자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현재 경찰관이 종래의 관행에 젖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그러나 경찰관들이 “남의 가정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따라 직무유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를 부추기고 있다(법률신문, 1999. 8. 26)). 결과적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변화는 가정폭력발생시 경찰의 출동이다(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인지부족으로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경찰의 출동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는 김혜선, 1999)). 더욱이 출동 경찰의 태도는 처벌법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출동하여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여러 조사분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처벌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심한 폭력 상황에 몰리게 하는 부작용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혜선, 1999; 정희진, 1999). 즉, 경찰이 당사자들의 집안 일이나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돌아간 경우가 32.8%로 여전히 가정폭력을 사소한 가족문제로 보는 경찰의 시각이 많음을 알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폭력사건을 따로 고소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으로 고소하라고 하는 것이 37.5%로 나타나고 있어 경찰이 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경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경찰 역시 일정부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경찰에서 1999. 4월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 (‘가정폭력 범죄 수사요령’의 주요내용은 ① 평상시 가정폭력법규 숙지 및 문제가정 계도활동 강화, ②

피해자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 친절한 자세로 신속, 정확하게 신고 접수, ③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신속하게 현장출동, 응급조치, ④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피해자를 이해하는 조사자세, ⑤ 재발방지를 위한 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적극 활용, ⑥ 직무상 알게된 비밀 엄수 등이다)에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노력이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대다수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 실례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사례에서 피해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이 경찰관의 무성의를 들고 있다(김혜선, 1999).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경찰의 조사나 응급조치과정에 가정복지사의 개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경찰의 응급조치과정에서의 가정복지사의 의무개입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가정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국가인정자격제도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사범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개선점의 방안으로 현재 각 경찰서별로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폭력문제전담부를 설치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법학계에서는 제안하고 있다(정현미, 1996). 이 부서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 연구, 경찰관 재량의 합리적 행사의 기준 제공, 경찰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경찰 차원에서의 신고전화 상담 등의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경찰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상담사례(손순희, 1999)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할지라도, 일단 가정폭력문제전담부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찰상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전문경찰관의 충원도 필요하다(최원규, 1996). 가족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과 수사기법만을 주로 전담하는 경찰관만으로 가정폭력문제

를 다루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와 임상실습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 전문인으로 가정문제전문가인 가정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복지사제도의 국가인정자격을 부여하여 가정폭력사건에 개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청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실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찰의 교육은 경찰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 필요 없이,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와 함께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 바람직 할 것이다(이만희, 1999; 한인섭, 1999).

특히 학술단체로서 가정복지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가정학회 가정복지사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되거나 한국가정관리학회와 대한가정학회가 공동사업으로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의식교육 등을 사범경찰관과 사범연수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집행에서 경찰이 보인 고압적인 자세나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즉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간 상황에서의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자들은 또 다른 형태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많은 상담기관에 하소연하고 있다. 즉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한다든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별도의 고소를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술이 만취하였으므로 술이 깨면 데리고 가서 잘 살아 라고 한다든지, 벌금을 한 번 물어볼 것이냐 등의 강압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부장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행위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현상이 있다. 또한 사건 접수 후의 지연,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오는 피해자들의 가중피해,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 폭력남편으로부터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손순희, 1999). 이러한 여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처벌법상 경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3.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가정복지사의 개입방안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의 판단자료에 가정복지사가 작성한 상담의견서를 참고로 함으로서 처벌법상의 가정복지사의 개입을 가장 명백히 하는 부분으로 손꼽을 수 있다.

첫째, 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에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가정관리관련 학문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사·심리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 전문적 지식 중에 가정관리관련 전공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된다. 또한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조사·심리의 자료로 가정복지사의 상담의견서를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과정의 개입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둘째, 처벌법 제20조는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두고 조사관의 자격·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관으로 가정복지사의 활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처벌법 제29조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도 판사는 가정복지사가 작

성한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상담한 의견서를 참고로 함을 제안한다. 즉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사건의 개입을 의무화한다면 법원에 가정복지사가 작성한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에 대한 상담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사용됨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4. 가정폭력예방교육에서 가정복지사의 개입방안

보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첫째,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둘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셋째,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넷째,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다섯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더 강화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에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되 가족문제 전문가인 가정복지사에게 맡겨야 만이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방지와 예방교육은 특히 이미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가정복지사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이 가정내 구성원간의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가족복지·가족생활교육·청소년복지·자녀교육·가족상담 등을 전공한 가정복지사가 담당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5. 가정폭력상담에서 가정복지사의 개입방안

보호법 제6조는 상담소업무에 관하여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 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 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소의 업무에서는 특히 가정복지사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 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에는 가정복지사가 임용되어 가정폭력상담에 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복지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업무에 전적으로 가정복지사가 개입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가정폭력상담에서는 가해자 치료교정, 부부치료, 자녀 및 가족치료 등이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가해자 치료교정, 부부치료, 자녀 및 가족치료 등의 상담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가정복지사를 가정폭력상담소에서의 의무 배치하여 가족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가정복지사의 개입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복지사의 배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IV.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 개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 개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첫째, 가정복지사 자격을 국가인정 자격제도로 한다. 둘째,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복지사의 개입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1. 가정복지사의 자격증제도

가정복지사 자격제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복지사’라는 자격증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제도는 공신력은 매우 높으나 개별사업법에 의해 그 자격을 규정하기 때문에 법령준비가 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가정복지사 자격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는 무엇보다 가정복지사 자격의 취득·유지·상실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킨 ‘가정복지사자격취득에관한법률’을 만들고, 기존의 복지관련법인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등 가정복지사가 일하는 현장과 관련된 법률조항에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가정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이라 하겠다(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해, 그리고 영유아보육교사의 경우 보건의사회령 제8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그 자격을 국가가 인정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서도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여 보육교사를 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복지사를 국가자격제도로 만들기 위한 법령준비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행정부처에 가정복지사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시켜야 하고, 아울러 가정복지현장에서 가정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자격제도로의 전환과정은 장기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이완정, 1999).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원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보호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이수로 취득한 자격과는 달리 가정복지사는 자격기준에 따라 등급화 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가정복지사가 사회복지사와 차별화 되는 점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보험, 공

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와 교육·보건·주택·환경·노동복지 등 복지관련부문 전 분야를 포괄하고(장인협, 1999) 있는데 반하여, 가정복지사는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결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상황에 놓인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가족을 적용·통합시켜 가족문제해결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사의 자격을 국가인정자격제도로 한다면 가정복지사의 소속은 다른 국가 자격제도(행정자치부소속의 소방시설관리자·행정사, 보건복지부소속의 간호사·조산사·의사·사회복지사 등, 교육부소속의 사서교사·양호교사·정교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행정부처, 즉 보건복지부나 여성부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복지사의 개입규정신설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 된지 4년째인 현재, 이 법에 대한 개정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복지사의 개입방안을 마련하면 첫째,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의무자에 가정복지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규정, 둘째, 경찰의 응급조치에 가정복지사의 의무개입규정을 두도록 하는 규정, 셋째,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의 판단자료에 가정복지사가 작성한 상담의견서를 참고로 하는 규정, 넷째,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담당자로서 가정복지사의 역할 규정, 다섯째,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복지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복지사의 개입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가정복지사의 국가자격제도의 마련으로 가정복지사의 위상을 확고히 할뿐만 아니라 가정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가정복지기초(3과목), 가정복지심화(4과목), 가정복지응용(3과목), 가정복지방법론(1과목), 가정복지실습(1과목))만이 아니라 특히 가정폭력사건에 가정복지사의 개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와 같은 이수과목 외에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관련된 상담 등의 과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가정폭력은 이미 단순한 가정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국가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간의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정폭력문제의 상담을 비롯하여 처벌법상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의 가정복지사의 역할, 사법경찰관의 응급처리과정에서의 가정복지사의 의무개입규정 신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자료로 가정복지사가 작성한 상담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복지사의 개입을 의무화·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의 담당자로 가정문제 전문가인 가정복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범죄의 개입을 법제화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상담 및 가족관계 등의 전문가인 가정복지사의 개입으로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사건의 개입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실태파악 및 이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대책 그리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에의 가정복지사 개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첫째, 건전한 가정문화개선의 정책적 고려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정폭력문제를 조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반적인 가정폭력 위험수준을 진단하고 법적·제도적 보호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범죄를 유발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가정문화개선의 정책입안에 반영하고, 장기적이

고 근본적인 전략수립에 활용케 한다. 넷째,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상 가정복지사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법률적 미비점과 문제점을 입법정책에 반영시키고,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 보호방안에 활용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병주(1998).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대한 평가와 전망.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343-365.
- 김정옥(2000). '가정복지사'제도에 대한 토론.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가정학회.
- 김혜선(1999). 가정폭력방지법 실행 실태 및 집행 대안 태도조사 결과분석 : 일반인 및 피해자 대상 설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박옥임·유숙영(2000). 가정폭력법상 '가정복지사'의 역할 및 제도화방안. 가정복지사의 현장활동을 위한 Extension Service Program.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8차 추계학술대회.
- 박혜인의 5인(1999). '가정복지사'《주민자치센터》참여방안에 대한연구-「가정복지센터」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85-190.
- 법률신문(1999. 8. 26). 제2815호 법조포커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구실 못한다.
- 손순희(1999). 가정폭력방지법 집행과정의 문제사례 분석.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이만희(199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이승미(1999).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제25차 한국가정관리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 이승미(2000).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과 실천방안에 관한 탐색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41-153.
- 이완정(1999). 가정복지사 양성 및 관리체계.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 장인협(2000).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춘숙(1999).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과 여성인권.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정현미(1996).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필요한가? 형사정책연구소식 11·12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23.
- 정희진(1999). 가정폭력 실태조사 : 아내구타, 인권, 가족가치에 관한 일고찰. 폭력 없는 사회가우리 토론회-'99 여성폭력실태에 대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 최원규(1996).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 제4호.
- 한인섭(1999).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정책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11-136.
- 홍옥화(2001). 가족의 위기. 가족과 한국사회-변화하는 한국가족의 삶 읽기-.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경문사, 290-323.